

회의자료 94-02

입양특례법 개정의 기본 방향에
관한 간담회의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입양특례법 개정의 기본 방향〉에 관한
간담회의록

일시 : 1994. 4. 14. (수) 14:30~17:00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층 소회의실

참석자 : 13명(원외 9명, 원내 4명)

김진수 보사부 아동복지과장
주정미 보사부 아동복지과 사무관
배태준 교수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김주수 교수 전 연세대 법과대학
김근조 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김태옥 부장 동방아동복지회
박인선 부장 대한사회복지회
박영옥 부장 홀트아동복지회
윤영수 수녀 성가정입양원
박순일 사회연구부장
정기원 연구위원
문병윤 주임연구원
안현애 연구원

〈간담회의록〉

정기원 : - 입양특례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자료 소개

- 국내 입양 중심의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을 제안
- 개정의 기본 방향중에서 특별양자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만큼 성숙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있으나 허위출생신고를 친생자 출생신고로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 부과와 입양기관의 의무부과증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봄.

배태순 :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함이 어떨까요?

정기원 :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봄.

김진수 : - 정부에서 법개정과 재정문제, 입양촉진법, 입양절차나 내용에 관한 의견이 나왔었으며 의견이 법개정쪽으로 모아졌다.

- 특례법에 국내 입양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국내 입양을 민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 따라서 국내입양특례법 개정을 의견을 통일했다.

김주수 : - 민법과 조화되어야 하므로 기본 방향으로 특별양자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의 양친들은 양자를 호적에 친자로 올리길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관계로 혈연에 혼란이 오고 있다. 즉 호적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친자로 올리고 싶은 희망과 공신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와 같이 호적에 입양이 아닌 친자로 허위신고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문제가 더 커질것임.

- 유럽은 양자를 친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생부모를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
- 한국은 유럽과는 다르며,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민법에 특별양자제도를 삽입하였다.
- 일본은 양자의 호적을 독립시켜 양부모에게 입적하면서 친자로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므로써 호적의 공신력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반드

시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 민법과 충돌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에 특별양자제도를 두는 것이 좋다.

박인선 : - 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요보호아동이 국내로 입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요보호아동의 친부모들이 신분노출을 거리지 않으며 일본은 요보호아동대상의 입양은 거의 없다.

배태순 : - 미국의 경우 원호적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양부모에게 새출생증명서를 발급 해주면 양친의 호적에 친자로 올릴 수 있다.

박인선 : - 민법은 요보호대상이 아닌 아동의 입양에 해당시키고, 요보호아동은 특례 법에 해당시켜야 한다.

주정미 : - 호적관계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 무적아가 호적을 취득한 후 아동의 호적은 제적시켜서 제적부에 보관하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그 주민등록번호를 양부모의 호적에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 파양되었을 때 입양전 후견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주수 : - 호적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호적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원적에 아이의 출신이 나와 있어야 한다.
- 양자를 친생자로 입적하는 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박순일 : -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버려진 아이들은 많은데 그 아이들이 가정보호를 받기 위한 국내 수용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회의의 초점을 질적·양적에 맞춘다면 좁고 깊숙하게 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수용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기원 : - 잠시 회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개정 범위가 전면개정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부분개정으로 가야 할지를 정하고, 개정의 기본방향 중에서 특별입양제

도의 도입과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부과, 입양기관의 의무 부과에 대한 토의를 거친후 특별입양제도를 논의함이 시간절약에 좋을것 같다.

박인선 : - 특별입양법률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정기원 : - 예

박인선 : - 그럼 김주수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수 : - 전면개정으로 가야 한다.

정기원 : - 간담회 자료 4쪽의 아동복지 최우선 원칙,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부과, 입양기관의 의무부과중 사후서비스 의무 부과 명시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정신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김주수 : - 법정신은 좋은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정기원 : - 민법에 별개로 국내외 입양을 다루는 특별입양제도를 설립하도록 한다.
-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 부과 내용중에서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보호 제공이 필요하다.
- 또한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장애인 등)에 입양보조금제도에서 차등화를 두도록 한다.

박영옥 : -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보호 제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입양기관의 의무 부과중에서 사후관리 의무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국가의 감독권 명시를 함으로써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을 감독하게 한다.

윤영수 : -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3번째 자녀 이후라도 입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아이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입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진수 : - 각 부처에 소자녀관 가치정립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어 다자녀 가정의 입양

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김태옥 : -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 부과에서 증증장애아와 파양아 등의 보호 내용이 미비되어있다.

주정미 : - 일본의 특별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적법에 관한 쟁점을 토의해야 할 것 같다.

정기원 : - 특별양자제도 도입의 개념은 친생자로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특별양자제도에는 민법과 다른 파양제도를 규정해야 함.

김진수 : - 입양기관에서 양부모와 양자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특별입양법에 의한 친자로 입적하도록하자.

박인선 : - 특례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입양기관이 할 수 있나요?

김주수 : - 양친만이 서류를 갖춰서 할 수 있다.

배태순 : - 개인입양을 불법으로 만들려면 입양기관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주수 : - 그럼 입양기관에 의한 출생신고만 인정하고 그 외의 자가 신고하면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출생신고 요건을 강화할 수는 있다.

김진수 : - 배교수님 주장하시는 인우보증인 개선안은 호적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특례 법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비밀입양에 대한 벌칙조항은 너무 강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비밀입양을 하여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너무 찍는다는 생각이 든다.

박인선 : - 그러나 친자로 입적하는 것을 합법화 시킬것이므로 벌칙 조항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또한 친자로의 입적이 합법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입양아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권리 조항을 넣어야 한다.

주정미 : - 이제 정리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

정기원 : - 우선 전면개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 부과와 입양기관의 의무 부과 사항도 합의되었다고 봄.
- 특별양자제도에서는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절차를 합법화하는 것과 파양 절차를 명시하고 입양에 대한 알 권리 조항도 명시하는 것에 합의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친생자 출생신고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았다.

주정미 : - 두가지 제안을 하겠다.

- ① 친생자 출생신고의 호적을 입양기관이 보관하고 양부모가 신고하는 방법
-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입양기관이 담당하는 방법

김주수 : - 민법 중의 호적법을 개정하여 호적법 몇조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을것 같다.

- 그런데 입양기관에 의해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느냐,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출생신고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입양기관측 : - 가정법원에 의해서 하면 친부모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므로 양친들이 좋아하지 않으며, 미혼모의 경우 호적에 아이를 올립으로써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호적법에 입양일선기관에 의해서 신고한 아이만 친생자로 합병화함이 좋겠다.

박인선 : - 또한 국가가 입양기관의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정기원 : - 지금까지의 토론을 정리하면 친생자 출생신고 절차 규정은 만들되 특별입양제도의 용어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현행 특례법 그대로 살리면서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봄.

주정미 : - 특례법을 그대로 살림이 좋겠다는 의견인것 같으며 간담회 자료 6쪽의 구조(제1장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양자될 자격, 입양의 동의 등

제2장 국내입양: 양친될 자격, 국내 입양의 절차, 입양의 효력 발생,

파양 등

제3장 국외입양: 양친될 자격, 국외입양의 절차 등

제4장 입양기관: 입양기관의 설립 및 허가, 감독 등

제5장 별칙)가 바람직하며, 이외에 보칙을 별도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 연장아든 어린아이든 호적에 입양아로 기재하면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할 때 지장을 주므로 친자로 기재함이 좋겠다.

김근조 : - 국가와 사회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원 : - 오늘 회의를 참고로 하여 시안을 만든 후 검토 회의를 다시 갖겠습니다.

주정미 : - 시안을 검토할 때 법원행정처의 법정과 사람들을 참석시켜서 함께 토의함이 좋겠습니다.

- 간담회 주요 내용 -

- (1) 현행 입양특례법의 개정 방향을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 (2) 특별입양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 (3)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절차를 합법화하는 것과 파양절차를 명시하고 입양에 대한 알 권리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짐.
- (4) 양친이 양자를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킬 때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그 조항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됨.
- (5) 양친이 입양기관에서 입양절차를 거친 후 가정법원의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호적에 입적하려면 친부모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므로 비공개를 원하는 양친들이 꺼릴 것이며, 또한 미혼모도 호적에 아이를 올림으로써 자신의 과거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므로 양친에 의한 출생신고보다는 입양알선기관이 친생부모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출생신고를 한 아이에 대해서만 친생자로 합법화해줌이 좋겠다.
- (6) 위와 같이 하면 개인에 의한 불법입양도 막을 수 있다.
- (7) 국가가 입양기관의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

다.

- (8)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 부과와 입양기관의 의무 부과 사항도 합의됨.
- (9) 간담회 자료 6쪽의 구조(제1장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양자될 자격, 입양의 동의 등, 제2장 국내입양: 양친될 자격, 국내 입양의 절차, 입양의 효력 발생, 파양 등, 제3장 국외입양: 양친될 자격, 국외입양의 절차 등, 제4장 입양기관: 입양기관의 설립 및 허가, 감독 등, 제5장 벌칙)가 바람직하며, 이외에 보칙을 별도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 (10) 국가와 사회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 (11)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안을 만든후 검토 회의를 다시 갖겠음.

入養特例法 改正의 基本 方向(案)

-懇談會 資料-

일시: 1994년 4월 13일(수)

오후 2:30 - 4:3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1층)

入叢特例法 改正의 基本 方向(案)

(1) 현행법의 문제점

1)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배경

가. 고아입양특례법

- ① 제안일자: 1961. 9. 12.
- ② 제안이유:
 - 국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고아입양에 대한 특례 규정
- ③ 주요 내용:
 - 국외입양의 절차
 - 양자의 자격에 대한 특례
- ④ 공포일자: 1961. 9. 30.
- ⑤ 1차 개정(1966. 2. 23)
 - 이유: 입양업무에 대한 감독 철저
 - 내용: 입양업무기관 지정
- ⑥ 2차 개정(1975. 12. 31)
 - 이유: 호적사무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 내용: 국외입양 감독권을 가정법원으로 이관
- ⑦ 폐지(1976. 12. 31)
 - 이유: 입양특례법 제정

나. 입양특례법

- ① 제안일자: 1976. 7. 21.
- ② 제안이유:
 - 국외입양절차의 미비점 보완
 - 입양절차의 간소화
 - 양자의 성과 분에 대한 특례 규정
- ③ 주요 내용:
 - 양자의 자격 규정
 - 양친될 자격 규정
 - 후견인의 입양 등의 확대
 - 양자의 성과 분에 대한 특례
 - 간소화된 국외입양의 절차
 - 입양알선기관의 국외입양업무
- ④ 공포일자: 1976. 12. 31.
- ⑤ 1차 개정(1990. 12. 31)
 - 이유: 가사소송법의 제정
 - 내용: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에 대한 허가 조항 폐지

2)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별첨-1 참조)

- 가. 민법에 대한 특례 조항의 미비
- 나. 국외입양 중심의 특례법

다. 현행 입양업무의 법적 근거 미비
라. 국내입양 활성화의 걸림돌

(2)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개정 요구 현황

1) 입양기관측의 요구

가. 이유:

- ① 형식적 성립요건의 미비
- ② 불법적 개인입양 규제
- ③ 양부모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 미흡

나. 주요 내용:

- ①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대한 입양기관의 허가 도입
- ②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입양 절차 규정
- ③ 입양취소 청구의 소 제기 기한 단축
- ④ 사후관리 규정 보완

2) 학계 및 법조계의 요구

가. 이유:

- ① 실질적 절차 규정의 미비
- ② 입법론적 문제점 보완
- ③ 법해석론상의 문제점 제거

나. 주요 내용:

- ① 양친될 자격에 대한 실질적 심사제도 도입
- ②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
- ③ 15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당사자로 규정
- ④ 친생자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 보완
- ⑤ 완전양자제도(또는 특별양자제도)의 도입

(3) 입양특례법 개정의 기본 방향

1) 개정 제안 이유

가. 현행 입양특례법의 미비점 보완

- ① 현행 입양특례법의 입법론적 및 법해석론상의 문제점 제거 필요
- ② 국내입양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규정 설정 필요
- ③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정립 필요
- ④ 불법적인 개인입양의 규제 장치 필요

나. 국내입양 저해 요소의 제거

- ① 친생자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 필요
- ② 입양기관의 의무 규정 설정 필요
- ③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 규정 설정 필요

2) 개정 방향

가. 개정 범위: 현행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

① 이유:

- 국내입양 중심의 법체계 확립
- 현행 입양특례법의 비활용성
- ② 전면 개정시 제기될 절차적 문제점
 - 관련법(호적법, 민법 등)에 대한 특례 규정
 - 관련부처와의 협의 필요
- ③ 전면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 입양절차의 체계화
 - 국내입양의 활성화

나. 개정의 기본 방향

① 아동복지 최우선 원칙

- 가정보호 우선의 필요성 명시
- 국내입양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 명시
-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로서의 입양 기능 명시

② 특별입양제도의 도입

- 민법에 의한 전통적 양자제도(보통양자제도)와 개정법에 따른 특별양자제도의 구분 명시
- 특별입양제도의 대상 한정
- 특별입양제도에 의한 양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절차 규정
- 개인에 의한 비밀입양 금지
- 파양의 절차 명시

③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 부과

- 입양업무의 위탁 명시
- 입양아에 대한 사회의 보호 책임 명시
- 입양보조금제도의 도입
-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보호 제공 명시

④ 입양기관의 의무 부과

- 사후관리의 의무 명시
- 전문직으로서의 자격 규정 명시
-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 명시

3) 개정 작업 추진 일정

가. 개정 기본 방향 설정

- ① 기본 방향(안) 준비: 4. 1. - 4. 9.
- ② 기본 방향(안) 1차 토의: 4. 11.
- ③ 기본 방향(안) 수정 및 보완: 4. 12. - 4. 16.
- ④ 기본 방향(안) 2차 토의: 4. 19.
- ⑤ 기본 방향(안) 수정 및 보완: 4. 20. - 4. 23.
- ⑥ 입양특례법 개정 기본 방향 설정: 4. 23.

나. 개정(안) 작성

- ① 개정(안) 작성: 4. 18. - 4. 25.
- ② 1차 토의: 4. 26.
- ③ 개정(안) 수정 및 보완: 4. 27. - 5. 2.
- ④ 2차 토의: 5. 3.
- ⑤ 개정(안) 수정 및 보완: 5. 4. - 5. 9.
- ⑥ 3차 토의: 5. 10.
- ⑦ 개정(안) 수정 및 보완: 5. 11. - 5. 14.
- ⑧ 개정(안) 윤리 및 자구 수정: 5. 16. - 5. 17.

다. 입양특례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① 주제:

- 입양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 입양특례법 개정(안) 내용

② 일시: 1994. 5. 24. 14:00-18:00

③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④ 참석자:

- | | |
|------------|------|
| - 학계 및 법조계 | 20명 |
| - 언론계 | 10명 |
| - 관련 단체 | 10명 |
| - 관련 공무원 | 20명 |
| - 입양업무 실무자 | 30명 |
| - 입양기관 책임자 | 10명 |
| - 기타 | 100명 |

<별첨-1> 현행 입양특별법의 문제점

현행법	개정이유	개정방향
입양특별법	민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적인 입양제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특별입양제도의 도입 -가칭 '특별입양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양자될 자격 입양의 동의 등 제2장 국내입양 양친될 자격 국내입양의 절차 입양의 효력 발생 파양 등 제3장 국외입양 양친될 자격 국외입양의 절차 등 제4장 입양기관 입양기관의 설립 및 허가 감독 등 제5장 별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 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 양을 보호하고 양자로 되는 자 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보호 아동의 입양을 보 호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가정보호가 우선되 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 지 않음.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탓에 법해석상의 문제가 제 기될 가능성이 있음.	-가정보호 우선의 원칙 명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 특별입양 입양기관 등
제2조 (양자될 자격) ① 이 법 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아동 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 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있 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	-양자될 자격을 시설보호아 동으로 한정함으로써 미혼 모의 아동에 대한 입양의 법적 근거가 미비. -연장아동까지 특례 규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탓에 입양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	-시설보호아동 증, 6세 미만은 특별입양의 대상으로, 그리고 6세 이상은 민법에 의한 보통 입양의 대상으로 규정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만을 특 별입양의 대상으로 규정 -미혼모의 아동에 대해선 미혼

헌법법	개정이유	개정방향
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양의무자를 확인 할 수 없어 보호의뢰한 자 2.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子)로서 도지사가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에는 호주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포함한다.	고 있으며, 연장아동의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모 일방의 입양동의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3조 (양친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는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일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양자를 천업·고역 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국내입양의 양친될 자격과 국외입양의 양친될 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국내입양의 양친될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국외입양의 양친될 자격은 본국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 -양친될 자격의 심사절차 명시 양친의 자격 심사 절차 명시
제4조 (입양의 동의) 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사망 기타	-미혼모의 아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불가능함.	-미혼모의 입양동의만으로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에 갈등할 수 있다.

②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당해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6조 (입양의 효력 발생)

① 양친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있어서의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

- 입양취소의 가능성에 대하여 양친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국내입양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파양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파양된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함.

-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
- 양자의 신분보장을 규정
- 파양의 절차를 명시
- 파양 후의 아동보호 규정을 명시

- 양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절차 명시

- 친생자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인우보증을 첨부하는 허위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함.

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친
 될 자의 가정 상황에 관한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양자의 성과 본)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
 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파양
 또는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가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2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신청
 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2항 각호의 서류
 2. 양자로 될 자가 제2조 제1
 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
 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
 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1990. 12. 31 삭제)

제9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이 국외에서 제2조 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
 음.

-국내 및 국외입양의 사후관리
 규정 명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그 알선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양알선기관) ① 입양알선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입양알선기관의 허가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인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대상국이나 당해국의 공인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조항은 없음.

-입양기관의 재정에 관한 내용이 없음.

-국내입양기관의 설립, 허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명시

-입양기관의 운영은 정부의 보조금과 입양수수료에 의하는 것으로 명시

현행법**개정이유****개정방향**

제11조 (양친의 가정조사와 비밀유지) ①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3조 각호의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 할 수 없다.

③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입양알선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 (무적아동의 취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그 양자로 될 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가창립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무적아동의 국내입양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음.

제14조 (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에 대하여 그 입양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서류의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

현행법	개정이유	개정방향
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보건 사회부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기준) 입양에 관하 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 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 (벌칙) 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제9조의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입양에 관한 벌칙 조항 이 없음.	-불법적인 개인입양에 대한 벌 칙 명시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입양인가에 관하여 법원에 번속
증인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인가
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이 법에

현행법**개정이유****개정방향**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할선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폐지법률) 법률 제731호 고아입양특례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법적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다.
